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범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mailto: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안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

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

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별표11)

자체심사·확인업체 시공현장에서 2명이상 동시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

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안제161조 및 별지 제62호·제63호서식)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하여 ‘법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대체 자료로 인정

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안별표5)

교육대상 구분을 삭제하고, 교육내용에 건설공사의 교육 및 시공절차 교육(1시간)과 주요 사망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예방교육(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교육(1시간)을 추가하여 내용을 개편

마. 특수건강진단등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 (안별표24)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4의 화학적 인자 중 유해인자 고유번호(Cas-No) 오류를 정비

바. 전산누락 지도기관 처분규정 신설(안별표2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안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선임 등 보고서 서식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를 기재 항목에 추가하여 자격 여부 및 사업장을 쉽게 확인하도록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2. 4. 25. ~ 6. 7.)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강화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제161조제1항제5호 중 “함유량”을 “함유량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로 한다.

제8장제1절에 제1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 내용	시간
1.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교량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2.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3.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설업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하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기간은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1 제1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시공능력 순위 200위 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회사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회사

라.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건설회사

마. 제4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회사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1)의 번호 13의 유해인자란 중 “127-19-5”를 “68-12-2”로 하고, 같은 1) 번호 21의 유해인자란 중 “156-59-2”를 “540-59-0”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에 바목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 별표 18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통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입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	-------------	------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제194조의2,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제출 대체자료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제16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 미사용 등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최초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제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나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 g/m<sup>2</sup>(재활용품))







붙임 서류	1.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건강·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동 정보가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품 또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4. (필요시)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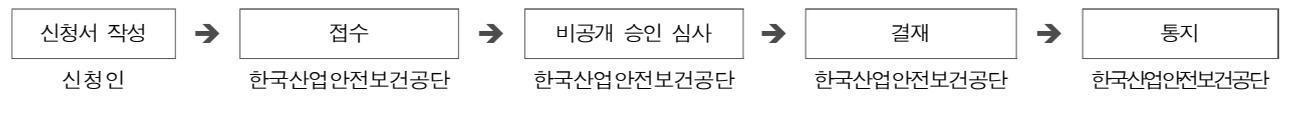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CAS No. 포함)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
  -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별로 건강·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
5.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7.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6. (생략)</p> <p>②·③ (생략)</p> <p><u>&lt;신설&gt;</u></p>	<p><u>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u></p> <p>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u></p>
---	--